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308 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6. 16.

판 결 선 고 2020.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조세 감면

○ [redacted]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2011. 11. 9. 구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에 따라, [redacted]시 B 외 15필지 413,612㎡를 개발대상으로 하고 C 주식회사를 투자자로 하는 'D리조트 조성사업 [redacted]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사건 진흥지구'라 한다) 지정고시를 하였다([redacted]특별자치도 고시 E).

○ C 주식회사는 2012. 3. 24. [redacted]시 F 외 5필지 83,842㎡와 그 지상 건축물 19,627.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구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3. 1. 16.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10. 2.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전문휴양업 등록거부처분 및 이 사건 진흥지구 지정 해제

○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과 수영장을 갖추어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수영장은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에 포함되는 필수 시설이므로 전문휴양업 등록을 위하여는 별도의 전문휴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위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전문휴양업 등록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도지사는 2017. 2. 23. 원고가 전문휴양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로 전면개정된 후의 것) 제163조에 따라 이 사건 [redacted]지구의 지정을 해제한다는 고시를 하였다([redacted]특별자치도 고시 G).

다.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앞서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에 근거한 것)(이하 묶어서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 4. 6.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그 내역은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의 표 기재와 같다.

○ 원고는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28. 기각되었다.

라. 재산세 부과처분

○ 피고는 이 사건 [redacted]지구의 지정 해제를 이유로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합계 572,131,320원과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에 근거한 것) 합계 114,455,650원(이하 묶어서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추징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8. '이 사건 [redacted]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세액만 추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하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내역은 [별지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의 각 표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피고는 원고가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진흥지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감면대상사업인 전문휴양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감면조세의 추징에 관한 법령의 요건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는 전문휴양업 등록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이를 위법하게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도지사의 이 사건 진흥지구 지정 해제는 위와 같이 위법한 전문휴양업 등록거부처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redacted]지구 지정 해제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가.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취득세 등 납부서의 각 과세대상 란의 부동산 표시 옆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취득세 등 경정청구 결과통지서(곧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이다)에 "귀사는 2017. 3. 27. [redacted]투자진흥지구 해제(2017. 2. 23.)로 인한 감면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는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각 심판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redacted]지구의 지정 해제 당시 및 이후에는 추징의 근거규정이 없어졌고, 구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2015. 12. 31.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개정되고 2017. 8. 9.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처분 시 조례'라 한다)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령의 소급적용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초 이 사건 감면은 이 사건 진흥지구 지정을 이유로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던 점까지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 모두에 관하여 '이 사건 [redacted]지구의 지정 해제'를 처분사유로 삼았고, 원고도 당연히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서 위 제5호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가 감면대상사업인 전문휴양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서로 다투고 있으나, 위 조항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제시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는 일단 이 사건 [redacted]지구의 지정 해제가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처분사유임을 전제로 위 처분사유를 부연하면서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넘어 처분의 근거법령까지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를 들어 처분사유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 이르러 당초 처분시와 달리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각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진흥지구의 지정 해제'라고 할 것이다.

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

도지사가 2017. 2. 23. 이 사건 [redacted]지구 지정을 해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처분 시 조례 부칙(제1526호, 2015. 12. 31.) 제3조, 개정 전 조례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감면으로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을 원고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각 기초사실을 오인하거나 감면조세의 추징에 관한 법령의 요건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선행처분의 하자가 승계되는지 여부

원고는 위 3.의 나.항과 같이 "전문휴양업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redacted]지구 지정 해제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redacted]지구 지정 해제를 이유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1)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5호는 위 법률이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위 조항 제5호는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살핀다.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등).

이 사건을 보건대, ① 피고의 전문휴양업 등록거부처분, ② 도지사의 이 사건 진흥지구 지정 해제, ③ 피고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④ 재산세 부과처분은, "①과 ②", "②와 ③", "②와 ④"가 각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인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이하 편의상 위 ①을 '선선행처분', 위 ②를 '선행처분', 위 ③ 및 ④를 '각 후행처분'이라 한다), 그 각 성질과 내용상 '선선행처분과 선행처분'이나 '선행처분과 각 후행처분'은 모두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런데 선선행처분과 선행처분이 2017. 2. 23.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9. 3.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선행처분과 선행처분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생겨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달리 선선행처분, 선행처분의 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한다고 볼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선선행처분, 선행처분의 하자가 승계됨을 이유로 각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별지1]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단위: 원)

처분원	과세원인	경정청구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2017. 4. 19.	건축(원시취득)	2,360,872,430	134,906,990
	지목변경	145,974,600	-
합계		**2,506,847,030**	**134,906,990**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 : 2017. 6. 12.)

1. 토지분

(단위: 원)

귀속연도	과세대상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소재지	면적			
2014	[]외 18 건	410,829.2 ㎡	90,510,710	18,102,140	108,612,850
2015	[] 외 13 건	408,242.1 ㎡	105,228,110	21,045,620	126,273,730
2016	[] 외 12 건	405,739.8 ㎡	112,767,800	22,553,560	135,321,360
합계			**308,506,620**	**61,701,320**	**370,207,940**

2. 건축물분

(단위: 원)

귀속연도	과세대상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4	[][]호	26,083,600	5,216,290	31,299,890
2015	[][]호	26,043,210	5,208,070	31,251,280
2016	[][]호	25,856,160	5,170,950	31,027,110
합계		**77,982,970**	**15,595,310**	**93,578,2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별지2]

관계 법령

▣ 구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21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구 ■■■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3. 1. 16. ■■■특별자치도조례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redacted]특별자치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2.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10년 동안 재산세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1항 각 호를 적용하고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7을 적용한다.

▣ 구 [redacted]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5. 12. 31.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526호로 개정되고 2017. 8. 9. [redacted]특별자치도조례 제1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redacted]투자진흥지구 또는 [redacted]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redacted]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부칙 <제1526호, 2015. 12. 31.>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redacted]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10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12([redacted]투자진흥지구 또는 [redacted]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매각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redacted]투자진흥지구 또는 [redacted]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1. 「[redacted]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redacted]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삭제 <2015. 12. 1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redacted]투자진흥지구 또는 [redacted]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 제1항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끝.